



제 2018-118호

중국

국가판권국, '검망2018' 특별단속행동 개시

북경사무소

■ 현황

- 지난 7월 16일 국가판권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公安部 등 4개 부처는 베이징 국가판권국 회의실에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활동에 대한 특별단속행동인 '검망2018'개시를 선언함과 동시에 기자간담회를 개최함

■ 주요내용

- 검망행동은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며,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연속 실시되었음
- 그동안 온라인 영상, 온라인 음악, 인터넷 문학, 인터넷 신문, 클라우드, APP, 온라인 광고연맹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매년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의 강도를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단속의 결과 온라인 영상, 온라인 음악, 인터넷 문학 등 영역에서의 혼란한 저작권 질서가 바로 잡혔으며, 정품 저작물의 유통이 크게 늘어나는 등 저작권자의 권익보호 수호, 온라인 기업의 저작권 보호의식 제고 등 양호한 결과를 얻음



- 2018년 검망행동의 특별단속 대상은 온라인상 무단전재, 쇼트클립, 애니메이션 등의 영역이며, 온라인 생방송, 지식공유, 오디오북 등 플랫폼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예정임
- 온라인상 무단전재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중점관리대상에 올랐는데, 그 이유는 최근 중국에서 1인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웨이보, 위챗 공식계정 등 중국 주요 SNS상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무단 전재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임
- 쇼트클립에 대한 집중관리 역시 진행할 예정임. 현재 중국에서 짧은 동영상을 의미하는 쇼트클립이 큰 흥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타인의 영상음악사진문자 등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 실연 및 전송하는 행위가 다수 존재함. 심지어 공정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개편하여 전송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며, 온라인 플랫폼들은 이용자가 업로드 한 저작물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을 남용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이번 특별행동에는 더우인(抖音), 콰이쇼우(快手), 시과스핀(西瓜视频), 휘산샤오스핀(火山小视频)등 중국의 대표적인 쇼트클립 플랫폼들에 대한 중점 관리감독이 실시될 예정임
- 3개 중점영역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질 예정인데, 그 대상은 애니메이션, 온라인 생방송, 지식공유, 오디오북 플랫폼 등임
 - 애니메이션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사이트, 온라인 공중계정, APP, 영상자막제작팀(视频字幕组) 등이 불법적으로 해적판 애니메이션을 전송하는 행위 및 허락 없이 타인이 저작권을 가진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이용하여 게임, 완구, 문구, 의류 등 소위 애니메이션 파생상품을 통한 애니메이션 저작권 침해를 집중 단속하여 근절할 예정임
 - 온라인 생방송, 지식공유, 오디오북 플랫폼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이러한 플랫폼들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음악, 문자, 구술 저작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임



- 또한, 그동안 실시되어 온 검망행동의 성과를 공고히 하여, 온라인 영상, 온라인 음악, 전자상거래 플랫폼, APP, 클라우드 등 영역에 대한 저작권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특히 온라인을 통한 교재, 아동도서, 음악 및 영상을 수록한 매개체, 불법링크, 외국에 불법으로 서버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할 것임
- 국가판권국은 나아가 다음의 3가지 사항에 대해 기관과 사회의 협조를 요청함
 - 첫째, 국가판권국은 이미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하여 일련의 저작권 침해 사건의 단서를 포착하여 전국 17개 성에 관련 단서를 이관했음. 또한 검망행동 기간 동안 지방 각급 저작권 행정부처는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조사하여 처리하며, 법에 근거하여 행정처벌의 강도를 강화하는 등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사건의 수량과 질을 더욱 높일 것임 요청함. 나아가 대중의 불만이 많거나 사회에 위해가 큰 해적판 사이트의 경우 일률적으로 엄중하게 처리하며, 정황이 엄중한 경우 인터넷정보판공실 및 통신주관부처에 요청하여 전신업경영허가증(电信业务经营许可证) 또는 ICP등록증을 말소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을 금지하도록 요청함과 동시에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공안기관에 적시에 이송하여 조사처리하게 함
 - 둘째, 인터넷 기업의 자발적인 저작권 보호책임 강화를 요청함. 인터넷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업계의 자율성을 높여 신고수리 및 신속처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저작권에 대한 관리와 감독 매커니즘을 강화해 나가야 함. 특히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조사 및 삭제, 관련 기록 보존, 위법범죄단서에 대한 보고 및 조사에 대한 협력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대중 또는 집행부처가 통보한 해적판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삭제해야 함.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은 반드시 '통지-삭제'등의 법정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며, 저작권 침해행위를 위한 어떠한 도움도 주서는 안 됨
 - 셋째, 사회의 공통된 노력이 중요함. 중국판권협회, 중국인터넷협회, 각 저작권 집중관리조직 중국 소재 외국인 권리자협회 대표처, 저작권 관련단체와 연맹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함



■ 평가

- 중국 정부는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특별단속인 '검망행동'을 통하여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현상을 줄이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됨.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편인데, 이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적발의 어려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사법구제의 어려움 또한 중국인 특유의 '한탕주의' 등에 연유하고 있어서 중국에서 저작권 보호가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출처

- 중국국가판권국망(中国知识产权资讯网)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382504.html>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382643.html>